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 .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마약류 원료·성분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마약류 원료·성분”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해당하는 원료·성분”으로 수정하고(안 제25조의2 및 제25조의4),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경우 통상적인 수입신고·검사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고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원료·성분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삭제함(안 제25조의5제1항 단서 삭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5조의2제1항 단서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마약류 원료·성분이”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이하 “마약류”라 한다)에 해당하는 원료·성분이”로 한다.

안 제25조의4제1항 단서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마약류 원료·성분이”를 “마약류에 해당하는 원료·성분이”로 한다.

안 제25조의5제1항 단서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삭제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5조의2(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제25조의2(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① ----- ----- ----- ----- ----- ----- ----- ----- ----- ----- 다만, <u>「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의 마약류 원료·성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 1회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u>	제25조의2(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① - ----- ----- ----- ----- ----- ----- ----- ----- ----- . <u>「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이하 “마약류”라 한다)에 해당하는 원료·성분은</u> ----- ----- ----- ----- ----- -----

[illegible]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은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구매· 사용실태, 위해정보 및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 ----- ----- ----- ----- ----- ----- ----- ----- ----- -----. <u>다만, 「마약류 관 리에 관한 법률」 상의 마약류 원료 · 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 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실태조 사를 실시하여야 한다.</u>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 ① ---- ----- ----- ----- ----- ----- ----- ----- ----- ----- -----. <u><단서 삭제></u>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② ~ ④ (개정안과 같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688
----------	------

발의연월일 : 2024. 10. 14.

발 의 자 : 서명옥 · 김미애 · 김 건
박정하 · 배준영 · 박준태
강선영 · 진종오 · 고동진
김용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초로 마약류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 성분이 대거 검출된 바 있음.

작년 6월 현행법이 개정되어 직접구매 해외식품에 대한 검사, 실태조사 등에 대한 근거조항이 마련되었으나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임.

이에 직접구매 해외식품 중 마약류 원료·성분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게시하고, 마약류 원료·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마약류 원료·성분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제25

조의4, 안 제25조의5).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원료·성분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삭제하고(안 제25조의5제1항 단서 삭제), 마약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함(안 제25조의2 및 제25조의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이하 “마약류”라 한다)에 해당하는 원료·성분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 1회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25조의4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마약류에 해당하는 원료·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 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	제25조의2(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 게시) ① ----- ----- ----- ----- ----- ----- ----- ----- ----- 다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이하 “마약류”라 한다)에 해당하는 원료·성분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 1회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의4(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원료·성분이 포함될 가능성	제25조의4(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및 관계기관 정보 제공) ① ----- ----- ----- ----- -----

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 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③ (생 략)	----- -----. 다만, 마약류에 해당하는 원료 · 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 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 해서는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 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	---